2021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1년 6월 30일(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4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안)>

<의안 제25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조제2항, 제28조제9호 및 제80조에 의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부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아울러 이에

따라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의 만기 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하여 만기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해 5월 3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모든 위원들은 SPV 설립 이후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회사채·CP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등 금융·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음.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저신용 및 취약 기업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SPV 설립 당시 대비 시장상황의 개선, 향후 불확실성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V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시장상황 개선을 고려할 때 당행의 SPV에 대한 추가 대출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 대출실행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SPV의 자금지원 등 정부와 당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점, 향후 코로나19 전개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SPV가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SPV가 시장 안전판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모든 위원들은 당행의 SPV에 대한 신규 대출실행 시한은 예정대로 종료하고 SPV의 매입기한은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접종 상황, SPV 보유 여유자 금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한편 모든 위원들은 SPV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당행이 SPV에 대해 실시한 제1회 대출금 잔액의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SPV가 당행과 산업은행 이외로부터는 차입을 할수 없어 당행 대출금의 회수시 회사채·CP의 대규모 매각으로 동 증권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회 대출금의 만기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여 SPV에 재대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향후 금융·경제 여건 변화 및 SPV의 지원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SPV의 회사채·CP 매입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SPV 운용의 단계적·점진적 정상화에도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과 동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안)(생략)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생략)